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강 동 오 의원)

의 안 번 호	24-93

발의연월일 : 2024. 8. .

발 의 자 : 강동오, 김승수, 이한동, 오옥자, 권인순, 채우진, 남해석, 이상원

1. 개정이유

마포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함께 지정벽보판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지정벽보판의 위탁과 관련한 근거가 미비하고,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게시대의 경우 공공 운영(무료)에 따라 수익성 저조 및 소상공인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오다 현재 일부를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이에 위탁 대상에 지정벽보판을 추가하고, 수탁자 선정 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지정벽보판의 게시율 증대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선정 방식을 조례에 규정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에 지정벽보판 추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수

탁자 선정 방법 규정(안 제17조)

3. 관계법령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4. 7. 29. ~ 8. 5.

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을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정벽보판”으로,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을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관리능력”으로,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를 “위탁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를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관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

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게시율 증대방안
6. 게시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안전관리 역량
7. 그 밖에 기관 평가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7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① ----------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정벽보판----------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관리능력---------- 위탁하여 ----------.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신 설>	③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마

	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게시율 증대방안 6. 게시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안전관리 역량 7. 그 밖에 기관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④ -----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관리----------.

【관 계 법 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 15.] [서울특별시조례 제9122호, 2024. 3. 15., 일부개정]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요 교차로·간선도로변 등으로서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장애의 우려가 있거나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

나. 생활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

다. 그 밖에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곳

2. 규격은 가로 6미터 이내, 세로 7미터 이내여야 하며, 재질은 친환경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사용하고,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해당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소 등의 현수막만을 게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과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업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시에 2개 이상 게시할 수 없다.

3. 지정게시대에 게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한 업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일한 지정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게시신청이 게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게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6.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거를 하지 않은 현수막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통건설국　보행행정과　박준혁
연 락 처	02-3153-9454